

생활관 운영 내규

제정 2014.09.01.

개정 2024.06.1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상지대학교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생활관 운영규정 제17조(선발), 제20조(납입금), 제25조(게스트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생 선발

제2조(신청)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기간 중에 소정의 신청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사자격) 원주시 지역 관내(부룬면, 지정면 제외) 외 지역 거주자. 단 생활관 운영규정 제16조 (입사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제4조(선발) 생활관장은 제출된 서류를 다음 각 호를 기준하여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① 신입생(입학년도 1학기)

1. 통학거리 60%, 입학성적 40% 비율로 점수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4.06.13.)
2. 수시, 정시, 추가 모집과 정시 미등록충원에 따른 인원 비율은 모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생활관장이 정한다.
3. 특정 학부 및 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② 재학생(전체 학년)

1.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으로 선발하되, 전 학기 생활관 및 행복기숙사 생활점수를 반영한다. 단, 2 학기 재입사자의 경우 직전학기 생활관 및 행복기숙사 생활점수만 반영한다.
2. 직전 학년도 관생으로 생활한 자 중 상점우수자 또는 교내 프로그램 참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하여 우선선발 할 수 있다.(상위1-3등)
3. 1학년 1학기로 복학예정자의 경우는 신입생 선발 기준에 의한다.

제5조(우선선발) ① 생활관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보호종료아동쉼터 입·퇴소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선발 할 수 있다.

② 생활관장은 학교로부터 거리, 상담결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우선선발 할 수 있다.

제6조(선발비율) 생활관장은 입사정원을 기준으로 1학년(신입생) 65%, 2학년 15%, 3학년 15%, 4학년 5%의 비율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비율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추가선발) 입사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은 추가선발 할 수 있다.

제8조(허가공지) 생활관장은 평가절차에 따라 선발된 관생에게 입사허가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시기) 생활관의 입사 시기는 매학기 초 3일 이내로 한다.

납입금

제10조(생활관비) ① 관생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생관리비 : 교비로 편성하여 생활관 운영경비, 유지보수관리비 및 건물, 시설설비,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의 감가충당금으로 사용한다.
2. 관생회비: 관생회비는 생활관비에 포함하여 징수 후, 일괄 인출하여 관생회장에게 인계한다.
3. 특별(임시)개방 사용료 : 특별(임시) 개방으로 발생된 수입금은 생활관장이 징수하여 교비에 입금

처리한다.

4. 수도광열비 : 생활관 수도광열비로 사용된다.

③ 생활관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생활관비 납부) 생활관 ① 생활관비 중 관생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입사시기에 따른 납부

입사시기	납부비율
개강 4주 이내	전액 납부
개강 6주 이내	80%
개강 8주 이내	65%
개강 10주 이내	50%
개강 10주 이후	40%

2. 다음과 같은 경우 관생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체육특기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체육부 재학생 : 관생관리비 100% 감면

나. 운동부 숙소[승리관(믿음관), 소프트볼 단체숙소(맑음관)]에 거주 중인 학생은 관생관리비 100% 감면

② 관생회비는 전원 납부한다.

③ 특별(임시)개방 사용료는 1인 1박 기준으로 납부한다.

④ 수도광열비는 관생관리비와 동일하게 납부한다.

제12조(생활관비 환불) 생활관비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단, 생활관 관련 규정, 준칙 등을 위반하여 강제퇴사 조치의 경우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의거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① 관생관리비는 입사기간 전일까지 환불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하며, 입사기간부터의 환불은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하되,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② 관생회비는 입사기간 전까지 환불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하며, 입사기간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임시)개방 사용료 환불은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1. 계절학기 및 장기이용자는 1인 1박 기준금액을 잔여일수만큼 적용하여 환불 한다.

2. 단기이용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수도광열비는 관생관리비와 동일하게 환불한다.

게스트룸

제13조(사용신청) 게스트룸은 사용하고자 하는 전 주 금요일 오전까지 생활관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배정원칙) ① 생활관장은 게스트룸 사용가능실수를 감안하여 초청인사를 우선배정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사람 순서로 배정한다.

② 교내 구성원 중 신청자가 많은 경우, 주 2일 이내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사용방법) ① 게스트룸 사용을 허가 받은 후 사용 당일 생활관사무실에 방문하여 게스트룸 사용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생활관 출입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다.

② 사용자는 생활관 출입카드를 익일 퇴실 시에 생활관사무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시간) 게스트룸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7:00 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

제17조(사용료) ① 사용료 납부는 급여공제 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변상 및 책임소재) 게스트룸 사용 시 고의, 안전, 파손 등에 대한 변상 및 책임소재는 생활관

준칙 제11조(변상책임), 제13조(안전관리 및 청소책임)의 안전관리 조항, 제14조(제규정 준수 및 책임 소재)의 책임소재 조항)에 준하여 해당사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운영 내규는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생활관 내규는 2014년 06월 25일 생활관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폐지한다.

부 칙

이 운영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내규는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내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내규는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내규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내규는 2024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 11조 제1항 2호 가목의 체육특기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체육부 재학생에 대한 관생관리비 감면은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입학생까지 적용하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운영 내규는 2024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